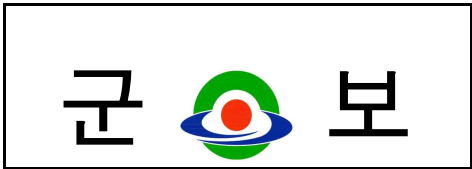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512호 2024. 3. 4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- 하천점용허가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4-32호)
-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(개간) 시행계획 승인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4-33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64)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4일

예 천 군 수 (인)



구 분	하천점용허가
하 천 명	한천(지방하천)
점 용 자 주 소	예천군수(건설교통과장) (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건설교통과)
위 치	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109-1번지 외 1필지
점용면적 (허가량)	일시점용 면적 : 1,225㎡
점용목적	공작물 설치
사업개요	군도3호선 등 재해복구공사
점용기간	2024년 3월 04일 ~ 2024년 12월 31일

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(개간) 시행계획 승인 고시

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(개간)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4일

예 천 군



- ① 사업목적 :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.
② 사업효과 :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.

승 인 조 서

사업명	위 치				승인 면적 (㎡)	사업기간	총소요 사업비 (천원)	사업시행자
	시군	읍면	리동	지번				
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(개간)	예천	예천	생천	449	4,960	2024.02.29. ~ 2025.01.31.	94,000	권 도 O